

문서번호	BSKS-3-1-51
제정일자	2012.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1/5

2012.03.01.제정 2016.04.01.개정 2017.04.07.개정 2022.04.15.개정 2023.02.28.개정 소관부서 : 사무처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학칙 제65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관한 세 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입금) 납입금이라 함은 입학금 및 수업료를 말한다.

제3조(등록)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이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1. 납입금 전액 납부
- 2. 납입금 분할 납부(별표1 분할납부 양식 제출)
-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별표2 연기신청서 양식 제출)

제4조(납부방법 및 금액) ① 소정의 납입금은 매 학기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입금을 납부한 자가 익년도 이후에 휴학당시와 동일한 학기 또는 월에 복학할 경우 납입금이 휴학 전에 납부한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에도 그 차액은 납부하지 아니한다.
- ③ 시간제 등록생의 납입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 납부한다. 수업료 × 신청학점 수/20
- ④ 소정의 졸업학점에 미달된 자의 납입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5조(납부기일) ① 납입금의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하되 당해 학기 또는 월의 개시 10일 이내 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학년 입학 당시의 납입금 납부기일은 예외로 한다.

- ② 총장은 가정형편에 의해 학생이 보호자와 연서로 납입금 분할납부를 신청 할 경우 부득이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당해 학기에 납입하여야 할 납입금을 4회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때 1회분은 납입금의 4분의 1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고 잔여분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연서로 연기 신청하여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7.04.07.>.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시 가정형편 등 기타 사유로 인해 1회분을 납입금의 4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7.04.07., 2023.02.28.>

제6조(납입금의 반환) ①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아래 제3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문서번호	BSKS-3-1-51
제정일자	2012.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2/5

이미 납부한 납입금을 반환한다.

-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및 휴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휴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미복학 제적 등의 사유로 등록금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단, 유예기간은 제적일로부터 5년으로 둔다)
- 5. 본인의 사망·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③ 납입금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휴학을 한 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1. 당해 학기 개시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납입금 전액을 반환 한다.
 - 2. 당해 학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금액 변경할 수 있다.(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함.)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제7조(납입금의 면제)** ① 총장은 본 대학의 장학금 지급과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납입금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 할 수 있다.
 - ② 분할등록 및 납입금을 완납하지 않은 학생이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받을 장학금은 미납부 납입금 완납 후에 장학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제8조(정벌) ① 총장은 납입금 납부기일 경과 후 체납이 그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1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이 된 경우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
 - ② 입학금을 납부 하여야할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장이 당해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이 외의 납입금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3-1-51
제정일자	2012.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3/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 『학생산학취업처』를 『산학처』로,『기획처』를 『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 『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문서번호	BSKS-3-1-51
제정일자	2012.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4/5

[별표1] <표 개정 2017.04.07>

20	- 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

학과(계열)					학년		학번			이름		
분할납부					분할	납부	ત્રી સ્ત્રી મો-	문□ 온라인□	어라히			
신청사유					신청	방법	443	正□ 근다인□	[편탁시	•		
구	분		납 -	부 금 액		학시	생회비	신문방송비	ו	납 부	금 합	계
등록	금액											
1차 납부일	(월	일)										
2차 납부일	(월	일)										
3차 납부일	(월	일)										
4차 납부일	(월	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 납부기일을 연기하고자 보호자 연서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또한 본 등록 기간 종료 후 2,3,4차 수납기간에 후납금(잔액)을 전액 납부할 것과 후납금(잔액) 미납시 학칙이 정한 규정에 따라 자퇴를 할 수 없으며 미등록제적 처리 될 것을 약속합니다.

※ 분할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장학금을 수혜 받을 시 등록금 수입으로 대체함을 서약합니다.

신청일 20 . .

신청자 성명

(1)

보호자 성명

(0)

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에 관련된 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신청자 정보(학과, 성명, 학번, 연락처, 보호자연락처)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의 내용 확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4.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부동의 🔲

※ 유의사항

- 1. 납입금 총액 중 본 등록기간 중에는 수업료의 1/4 이상의 금액을 반드시 납부하고 그 잔액을 2,3,4 차 수납기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 기간 내에 납부치 않을 때는 계속 수강의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 학칙이 정한 규정(제적)에 따라 처리합니다.
- 2. 등록금납부 연기를 받은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2,3,4차분을 완납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850-1028)
- 3. 입금계좌 : **부산은행 ***-***-** 부산경상대학교** (반드시 학번과 본인명의로 입금)

구 분	금 액	합계
1차 납입금(월 일)		
2차 납입금(월 일)		
3차 납입금(월 일)		
4차 납입금(월 일)		

* 국가장학금 추후 지급으로 분할등록 학생의 후납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BSKS-3-1-51
제정일자	2012.03.01
최종개정일자	2023.02.28.
페이지 수	5/5

[별표2] <표 개정 2017.04.07>

20 - 학기 등록금납부 연기신청서 (접수번호:)

학 과: 학 번: 성 명: 사 유:

구분	항 목	금 액		비고
1	총 등록금액	일금(₩)	
2	납부금액	일금(₩)	*신청시 납부하는 금액을 기재함.
3	미납액 (납부연기 신청금액)	일금(₩)	1항의 "총등록금액" 에서 2항의 "납부금액" 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재함.
4	미납액 납부 약속기일	년 월 일		미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일을 기재함

지도교수 상담 내용	지도교수 확인			
	성명	(인)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위 학생과의 관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에 관련된 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신청자 정보(학과, 학번, 성명)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의 내용 확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 4.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부동의 🔲

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

결	직원	팀원	팀장	처장
결 재				
.,				